

연구교수 임용규정

시행 : 2021.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교수의 임용조건, 자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교수라 함은 본교의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선발계획에 따라 임용된 교원을 말하며, 직위는 조교수(연구)로 한다.

② 연구교수는 임용기간 중 본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의 책임과 신분을 보유하며 승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교수의 신규임용 자격요건, 처우, 업무내용, 재임용 기준 등의 제반사항은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특별히 정하여진 것이 없다면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전임교원 임용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등 본교 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규임용 및 그 절차) ①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주5일 전일제 근무 가능자
3.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② 연구교수 지원자는 본교 추천교수의 추천서[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고, 당해 임용기간의 업적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6조(재임용 자격 및 절차) ①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원)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구교수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받은 연구교수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연구진행결과보고서, [별표 5] 추천교원의 재임용 추천서를 소속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심사 대상 연구교수의 실적평가는 재임용 예정 4개월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연구소(원) 소속 교원의 경우 연구소(원)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1. [별표 6] 연구교수재임용기준

2. [별표 3] 연구교수심사평정표 점수 평균 70점 이상

- ④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자 구성은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추천교수 등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 한다. 단, 연구소(원)의 평가자 구성은 「부설연구소(원)설립과운영에관한규정」 제7조의 상임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연구소(원)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원)에서 평가자 구성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연구교수 전공의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추천교수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재임용 심사결과 통보)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해당 연구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원)장은 그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교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 연구교수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이의제기) ① 재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교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또는 연구소(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해당 연구교수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탈락자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또는 연구소(원)교원인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의제기 절차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

제9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대상자별로 각각 체결하되,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직급
2. 임용기간
3. 직무내용 및 의무사항
4. 연봉금액
5. 기타 계약조건

제10조(보수) 연구교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복무) ① 연구교수는 책임강의시간 없이 연구에 전념한다.

- ② 연구교수는 타 기관의 직을 겸하거나 타 기관에 출강할 수 없으며 창업할 수 없다.
- ③ 연구교수는 연구년 및 교수업적평가, 명예퇴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연구교수는 학과(전공), 학부 및 전체교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지도를 할 수 없다.

제12조(의무) ① 연구교수는 임용기간 중 [별표 6]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고 임용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교수가 전직 등의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잔여 임용기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연

구교수가 의무를 미이행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추천교원이 의무사항을 대신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연구교수를 추천한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선의의 관리자로서 제반 지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추천교원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공간 및 비품, 연구에 소요되는 기계기구 등 연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연구교수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교수 또는 추천교원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구교수 본인 또는 추천교원은 사유발생 시점부터 본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비 연구 과제 및 연구활동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3조(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 ① 트랙전환의 기회는 신규임용 후 4년 10개월이 경과하고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연구교수에게 부여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의 트랙전환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실적은 트랙전환 예정일 4개월 전을 기준으로 5년간 역산한 실적을 평가한다.
- ③ 트랙전환 심사 대상자는 [별표 2]의 연구·교육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트랙전환 심사평정표 평가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④ 트랙전환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4조(재임용탈락 및 징계) ① 제6조 제3항의 기준에 미달한 연구교수는 재임용에 당연히 탈락하며, 「전임교원임용규정」제44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 재임용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② 연구교수의 임기 중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본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소[원] 소속 교원에 관한 특칙) ① 연구소(원)에 소속된 연구교수는 트랙전환 시 유사전공학과(부)로 발령하고 트랙전환심사는 유사전공분야 대학(원)에서 진행한다. 이때, 유사전공분야는 캠퍼스별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유사전공학과(부)에서 해당연구교수의 발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캠퍼스별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트랙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트랙전환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본 규정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재임용 평가)는 2013년 4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③(경과규정) 2013년 4월 이전 임용한 연구교수의 경우는 최초 임용 후 3년 경과 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의 80%를 충족한 연구교수는 소속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절차를 통하여 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C) 교원의 경우 조교수(연구)로 직위를 변경한다.

[별표 1] 연구 진행 결과보고서

연구 진행 결과 보고서

연구교수	소속					
	교수명					
인적사항	국문					
	영문					
논문명	구분	국제학술지				
		SCI	SSCI	A&HCI	SCIE	IF합
	편수					이상
	게재 (예정) 학술지 명					
게재(예정) 학술지 (해당학술지 구분 에 따른 편수/IF 기 재)	학술지명					
	출판 (예정)일					
국내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연구진행내용

논문별쇄본이 나온 경우에는 연구진행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별쇄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항목을 참조하여 총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4를 구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범위 및 방법
3. 연구기간 내 연구 내용 (월별 진행도)
4. 현재 연구진행 상태
5. 기타 첨부자료
 - 가. editor와의 교신내용
 - 나. 논문 manuscript

※ 논문 1편당 보고서 1건 작성

[별표 2] 연구·교육 활동 계획서

연구·교육 활동 계획서

연구교수 인적사항	소속	
	교수명	

구분	주요내용	
연구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강의 운영	※ 영어강의 혹은 교양강의 계획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교수법 개선	
교육	학생지도	
	기타	

실천	교내외 봉사	
----	-----------	--

[별표 3] 연구교수 심사 평정표

연구교수 심사 평정표

평 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평 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평정항목	배점	평정내용 (방법)		평가점수	비 고
1.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20)	5	1-1. 인성 및 품위유지 (성희롱, 진정, 투서,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기타 물의 등)			
	5	1-2. 근태 및 성실성 (출퇴근(근태) 상황 및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업무 종사 여부 등)			
	5	1-3. 조직적응도 (동료연구자들과의 관계 등)			
	5	1-4. 교육관계 법령 및 교내 제규정 준수 여부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2. 연구능력 및 실적 (80)	10	2-1. 학문연구에 대한 향후 발전가능성			
	10	2-2. 임용 후 현재까지 연구 진행 상황			
	10	2-3. 연구교수로서의 열의			
	10	2-4. 논문 또는 실적 내용의 창의성,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기여도			
	20	2-5. 연구업적 계재 학술지의 전문성 및 지명도			
	20	2-6. 연구업적의 편수에 관한 평가(주저자,교신저자,공저자 여부 반영) - 매우많음:20, 많음:15, 보통:10, 적음:5, 매우적음:0			
합 계					
종합 의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4] 트랙전환 심사 평정표

트랙전환 심사 평정표

평 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평 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평정항목	배점	평정내용 (방법)	평가점수	비 고
1.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20)	5	1-1. 인성 및 품위유지 (성희롱, 진정, 투서, 금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기타 물의 등)		
	5	1-2. 근태 및 성실성 (출퇴근(근태) 상황 및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업무 종사 여부 등)		
	5	1-3. 조직적응도 (동료연구자들과의 관계 등)		
	5	1-4. 교육관계 법령 및 교내 제규정 준수 여부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2. 연구역량 및 실적 (50)	15	2-1. 연구실적의 양적 수준		
	15	2-2.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10	2-3. 학회 등 학술공동체 기여도 및 향후 활동계획		
	10	2-4.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의 발전 가능성		
3. 교육역량 및 계획, 사회기여 (30)	10	3-1.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 계획 평가		
	15	3-2. 강의 계획 및 교수법 등 교육활동 계획에 대한 평가		
	5	3-3. 교내외 봉사 계획 평가		
합 계				
총 합의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5] 추천서

추 천 서

지원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
	영문)		

추천의견 :

20 년 월 일

추천교원

소 속 :

대학

학부(과)

성명 :

(인)

※ 추천교원은 지원자의 취업 상태 등을 파악하여 연구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타기관의 정규직 및 전일제(full-time) 근무자는 사직 후 가능함)

[별표 6] 연구교수 재임용 기준

계열구분	필요 연구실적	연구교수 심사평정표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아래 1) 과 2) 실적 1) SSCI / A&HCI 1편 × 재임용기간 2)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편 × 재임용기간	3인이상 평균 70점 이상
이공· 의학계열	아래 1) 또는 2) 실적 1) SCI(E) 3편 × 재임용기간 2) SCI(E) IF합 5 × 재임용기간	3인이상 평균 70점 이상

1.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교수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2. 발표되는 논문에 다른 기관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 논문편수 산출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논문편수 산출방법 : 교내저자 수/n (n=총 저자 수)
3. IF 적용기준은 논문게재 해당년도 기준으로 연구교수 환산 IF를 적용함.
 ※환산IF : 저널IF × 논문편수 (이공의학계열에 한해 적용)
4. 국제논문을 국내논문으로 대체는 불가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자는 인정하지 않음
5. 연구실적 심사기간 내 출간된 논문(권, 호, 페이지 부여 논문)에 한하여 인정함. 단, 임용계약서에 실적인정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 임용계약서에 따름.
6.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서 SCI(E)급 논문을 게재한 교원은 이공의학계열 기준을 준용함
7. 최초 1년은 연구진행상황보고서 평가 또는 계재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재임용기간에 최초 1년을 산입하여 심사한다.